

SE♥UL M! SOUL

보 고 의 건

2025. 4.

경 제 실

1

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,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
 - 소득평가액 : 실제소득 - 근로소득 공제 - 가구특성 지출비용(복지수당 등)
 - ※ 근로소득 공제율 : 30% (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)
- 다만, 낮은 소득 공제율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수급자격을 잃게되어 근로 회피 또는 저임금에 머무르려는 유인 발생
 - '25년 생계급여 자격기준은 월 765천원, 중위소득(월 2,392천원)의 32% 적용
 - 1인가구 기준 월 급여 1,094천원 이상 근로소득 발생시 생계급여 박탈
 - ※ 월 근로소득 1,094천원의 70% 적용시 765,800원 > 생계급여 기준 765,444원
- 수급 자격 박탈 우려로 공공일자리 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자립 위축 및 빈곤 고착화 등 사회적 문제 야기
 - 저소득층(소득하위 20%) 근로소득(3분기) : ('23) 334천원 ('24) 291천원

< 관련 언론보도 >

- ✓ 수급자 탈락될라 일자리 연감생심...月 70만원의 삶 강요 (국제신문, 24.3.)
- ✓ 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. 몰래바이트 하는 이유 (뉴스타파, 22.6.)

□ 건의내용

-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근로소득은 별도 공제율을 설정 (상향 조정)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 (서울시 → 보건복지부)
- 정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세부 사항 논의를 통해 사업 지침 (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)에 현실적인 소득공제율 반영 추진

<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(안) >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소득평가액 범위 및 산정기준) 1~12호(생략) * 예시 11호 : 제8호부터 제10호(장애인, 학생, 노인 등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	< 신설 > 13호 : 저소득층 자활발판 마련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정부·자치단체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

- 「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」(사업지침)에 ‘정부·지자체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참여자’ 유형 신설, ‘소득공제율 60%’ 적용
 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유지하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
 - ※ 市 동행일자리(일 6시간, 주 5일, 최저임금) 기준 : 월 급여 1,647천원
 - ▶ 현행(30%) : 소득평가액 1,153천원 > 중위소득 32% 초과 (1인가구 기준, 76만원)
 - ▶ 개정(60%) : 소득평가액 659천원 < 중위소득 32% 미만 (1인가구 기준, 76만원)

< 사업지침 수급자 공제율 신규유형 신설(안) >

공제 대상 수급(권)자	공제대상 소득	공제율
(신설) · 정부 및 지자체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참여자	· 공공일자리 근로소득	· 60%

□ 개선효과

- 저소득층 경제활동 진입으로 소득증가 및 현실적인 자활발판 마련
- 절감되는 생계급여 예산 활용, 복지제도 질적향상 및 공공일자리 확대

□ 추진현황

- 개정요청 공문 송부(일자리정책과 → 보건복지부) : '25. 2. 20.
- 개정요청 공문 송부(법무담당관 → 행정안전부) : '25. 3. 28.